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924호

나. 발 의 자 : 김혜지 의원

다. 발의일자 : 2025년 8월 11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내부 규정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부실 급식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부실 급식 방지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의 사진과 열량 공개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급식 사진과 열량을 추가함(안 제10조제5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8. 20. ~ 8. 24.(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김혜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24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급식의 사진과 열량을 공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실 급식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제3항)¹⁾, 학교급식의 구체적인 공개 사항은 동 조례 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공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²⁾
- 이번 개정안은 제10조제5호에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식단 변경 사유 포함)’을 공개사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16년 대전의 초등학교 부실 급식 논란³⁾ 이후, 각 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 사진과 열량 등 관련

1)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공개)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양, 위생, 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
6.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단무지 1조각에 김치도 없이...한 초등학교의 ‘불량 급식’ (2016.6.29. 한겨레)

‘수박 한 조각 꼬치 한 개’...상상초월 부실급식에 온라인 ‘발각’ (2016.6.29. 동아일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운영하면서 이를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1] 학교급식 사진 공개 관련 지침

구분	내용	출처
교육부	○ 학교급식법령 준수사항 - 평가항목 :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영양량 표시제 시행 및 급식메뉴 사진 공개 (학생에 제공되는 실제 급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	제5차 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서울시교육청	○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생에 제공되는 실제 급식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급식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그림-1] 학교급식 사진 공개 예시

급식	점심	급식	점심
등록일	2025년 07월 01일 화요일	등록일	2025년 07월 14일 월요일
제목	점심	제목	점심
식단	밥(아침미)밥, 김새우근대국, 땅콩육추이소스, 명절채소된 배추김치, 바나나	식단	브리밥, 도토리묵냉국(5.6.9.13.16), 간장불고기(5.6.10.13), 고추장떡(5.6), 콩나물우침(5), 유골리멸치볶음(5.6.13) 바추김치(9)
칼로리	675 kcal	칼로리	805 kcal
식단이미지		식단이미지	
△△초등학교		□□중학교	

○ 그러나 2022~2024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급식사진 게시’ 항목이 미흡한 학교가 일부 존재하였으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2] 2022~2024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현황

연도	평가항목	내용	평가결과			
			대상학교	우수	보통	미흡
2022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영양량 표시제 시행 및 급식 메뉴 사진 공개	10. 식단에 표시 대상 식재료의 원산지 및 영양량 표시제도 시행, 실제 급식메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는가?	1,348	1,324	17	7
2023		-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및 1식당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 주요영양소에 대한 영양량을 표시하여 공지하는지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실제 급식사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지 여부	1,346	1,293	35	18
2024			1,343	1,324	8	11

[표-3] 2022~현재 급식정보 홈페이지 게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연번	연도	접수기관	급식 게시 정보	민원내용
1	2022	서부교육지원청	급식 사진	실제 급식과 배식량 차이
2	2022	서부교육지원청	급식 사진	실제 급식과 배식량 차이
3	2023	보건안전진흥원	급식 식단표	급식 메뉴 이름과 실제로 나오는 것이 다름
4	202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급식 사진	급식 사진 지연 게시
5	2024	본청	급식 사진	급식 사진 미게시
6	2024	서부교육지원청	급식 사진	실제 급식과 배식량 차이
7	2024	서부교육지원청	급식 사진	홈페이지 급식사진 게시 지연
8	2024	남부교육지원청	급식 사진	실제 급식사진 공개 요청
9	2025	중부교육지원청	급식 식단표	월간 식단표와 다른 메뉴 제공
10	2025	중부교육지원청	급식 식단표	월간 식단표와 다른 메뉴 제공
11	202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급식 사진	급식 사진 지연 게시
12	202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급식 사진	급식 사진 미게시
13	2025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급식 식단표	월간 식단표 미리 게시 요망

- 따라서 안 10조제5호 본문은 현행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식단 열량 및 사진 공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급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 한편, 안 제10조제5호 단서는 식단표와 실제 제공 식단이 다를 경우, 그 변경 사유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2항4)은 학교장에게 주간·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식당 및 교실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사일정 변경, 근로자 파업, 전염병 발생, 식자재 수급문제, 급식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 식단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 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합니다.

- 이에 대해 현행 시행규칙은 식단 변경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는 급식 제공방법 변경 시 학부모에게 변경내용을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10조제5호와 같이 식단 사진과 변경 사유를 함께 공개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체 학생에게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사진·변경 사유는 공개하되, 일부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대체식단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0439, 2025. 8. 20.)
- 이는 안 제10조제5호 단서의 규정이 식단 변경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인 알레르기나 특정 메뉴 부족 등으로 일부 학생에게 대체식단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	-------	----------------

5)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학교급식 중단시 단계별 조치 사항
- 변경내용 학부모 안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제공 방법 변경 내용 안내

관계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